

[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1. 원광보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글로벌호텔관광과”를 “스마트호텔관광과”로 변경하며, “의무행정과”를 “보건의료행정과”로 변경하고, “3D제품디자인과”를 “주얼리디자인과”로 변경한다.
- 같은조에 “글로벌항공서비스과”,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주간 “20명”, 합계 “20명”, 수업연한 “2년”을 삭제한다.
- 같은조에 “응급구조과”,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주간 “20명”, 합계 “20명”, 수업연한 “2년”을 신설한다.
-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 설치)에 “호텔관광서비스학과”를 “스마트호텔관광학과”로 변경하고, “의무행정학과”를 “보건의료행정학과”로 변경한다.
- [별표1] 전문학사학위종별 보건전문학사 해당학과명에 “보건의료행정과”, “응급구조과”를 신설하고, 관광전문학사 해당학과명에 “스마트호텔관광과”를 신설한다.
- [별표2] 학사과정 학위종별 관광학사 해당학과명에 “스마트호텔관광학과”를 신설하고, 의무행정학사 해당학과명에 “보건의료행정학과”를 신설한다.
- 같은조 기존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항 변경하고, 같은항의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 제24조(편·재입학시기)에 제1항 “① 편입학은 매학년도 1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1 이전에 한다.”를 “편입학과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 이전에 한다.”로 변경한다.
- 같은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 제25조(편입학) 제1항에 “32학점”을 “30학점”으로 변경하며, “2학년 1학기 초”를 “학기 초”로 변경하고, “전문대학, 일반대학졸업자의 편입, 외국에서 졸업한 자의 편입은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든 허용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 정원외”를 “간호학과 정원외”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2항에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전적 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를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로 변경한다.
- 제81조(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 제1항 제1호에 “원광여행사”를 “학교기업 원광여행사”로 변경한다.
- 제8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제2항에 “원광보건대학교 WMTC,”를 “WMTC”로 변경하고, “WM카페테리아 본점 및 2호점은 익산시 익산대로 460, WMTC익산지점은 익산시 무왕로 839”를 “WM카페테리아는 익산시 익산대로 460”으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5조의2, [별표1], [별표2], “제2조(학과 신설 및 개편) ① 2024학년도 말로 글로벌항공서비스과를 폐지한다. ② 2024학년도부터 응급구조과를 신설한다. ③ 2024학년도부터 글로벌호텔관광과를 스마트호텔관광과로, 의무행정과를 보건의료행정과로, 3D제품디자인과를 주얼리디자인과로 변경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글로벌항공서비스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스마트호텔관광과로 전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인문사회계 학과로 전과한다.(단, 유아교육과는 제외한다) ② 글로벌호텔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스마트호텔관광과 소속으로 한다. ③ 의무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보건의료행정과 소속으로 한다. ④ 3D제품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주얼리디자인과 소속으로 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내 용						
현행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계열분류	학부	모집단위(학과명)	입 학 정 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유아교육과	50		50	3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사회복지과	73	27	100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글로벌호텔관광과	30		30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글로벌항공서비스과	20		20	2
	자연과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193		193	4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임상병리과	120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물리치료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방사선과	114		114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기공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위생과	120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의무행정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안경광학과	40		40	3
			<신 설>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식품영양과	30		30	2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외식조리과	76		76	2
	자연과학	뷰티디자인학부	미용피부화장품과	78		78	2
	자연과학	군사학부	의무부사관과	40		40	2
	공 학	군사학부	전투부사관과	40		40	2
	예·체능	뷰티디자인학부	3D제품디자인과	20		20	2
	총계			1,284	27	1,311	
개정(안)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계열분류	학부	모집단위(학과명)	입 학 정 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유아교육과	50		50	3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사회복지과	73	27	100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스마트호텔관광과	30		30	2
			<삭 제>				
	자연과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193		193	4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임상병리과	120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물리치료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방사선과	114		114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기공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위생과	120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보건의료행정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안경광학과	40		4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응급구조과	20		20	2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식품영양과	30		30	2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외식조리과	76		76	2
	자연과학	뷰티디자인학부	미용피부화장품과	78		78	2
	자연과학	군사학부	의무부사관과	40		40	2
	공 학	군사학부	전투부사관과	40		40	2
	예·체능	뷰티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과	20		20	2
	총계			1,284	27	1,311	

구 분

내 용

현행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 설치)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위(계열·학과명)	대계열분류	입 학 정 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20	20	2
물리치료학과	자연과학		40	40	1
간호학과	자연과학		20	20	1
치위생학과	자연과학		20	20	1
유아교육학과	인문사회		20	20	1
치기공학과	자연과학		18	18	1
호텔관광서비스학과	인문사회		12	12	2
방사선학과	자연과학		20	20	1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		20	20	2
외식조리학과	자연과학		18	18	2
미용피부화장품학과	자연과학		14	14	2
임상병리학과	자연과학		20	20	1
의무행정학과	자연과학		20	20	1
합 계			262	262	

개정(안)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 설치) (현행과 같음)

모집단위(계열·학과명)	대계열분류	입 학 정 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20	20	2
물리치료학과	자연과학		40	40	1
간호학과	자연과학		20	20	1
치위생학과	자연과학		20	20	1
유아교육학과	인문사회		20	20	1
치기공학과	자연과학		18	18	1
스마트호텔관광학과	인문사회		12	12	2
방사선학과	자연과학		20	20	1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		20	20	2
외식조리학과	자연과학		18	18	2
미용피부화장품과	자연과학		14	14	2
임상병리학과	자연과학		20	20	1
보건의료행정학과	자연과학		20	20	1
합 계			262	262	

현행		개정(안)	
[별표1] 전문학사학위종별		[별표1] 전문학사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학과명	학위종별	해당학과명
보건전문학사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의무행정과, 안경광학과, 미용피부관리과, 환경위생과, 재활공학과, 애완동물관리과, 의무부사관과, 허브테라피향장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의료관광코디과, 미용피부테라피과, 미용피부화장품과	보건전문학사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의무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 안경광학과, 미용피부관리과, 환경위생과, 재활공학과, 애완동물관리과, 의무부사관과, 허브테라피향장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의료관광코디과, 미용피부테라피과, 미용피부화장품과, 응급구조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공업전문학사	식품과학과, 컴퓨터응용개발과, 정보통신과, 환경과학과, 인터넷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콘텐츠전공, 정보통신전공, 정보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국방정보과, 정보부사관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공업전문학사	식품과학과, 컴퓨터응용개발과, 정보통신과, 환경과학과, 인터넷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콘텐츠전공, 정보통신전공, 정보콘텐츠과, 영상콘텐츠과, 국방정보과, 정보부사관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간호전문학사	간호과	간호전문학사	간호과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공무원행정과, 다문화복지과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공무원행정과, 다문화복지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가정전문학사	의상디자인과, 식품영양과, 패션코디네이션과	가정전문학사	의상디자인과, 식품영양과, 패션코디네이션과
산업예술전문학사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영상애니메이션과, 영상그래픽디자인과, 문화상품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3D제품디자인과	산업예술전문학사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영상애니메이션과, 영상그래픽디자인과, 문화상품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3D제품디자인과
영어전문학사	미디어영어과	영어전문학사	미디어영어과
경영전문학사	경영정보과, 경영정보전공, 유통경영전공, 비서경영전공, 세무회계과, 서비스창업경영과, 창업경영과	경영전문학사	경영정보과, 경영정보전공, 유통경영전공, 비서경영전공, 세무회계과, 서비스창업경영과, 창업경영과
관광전문학사	관광산업과, 호텔경영전공, 관광경영전공,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외식조리산업과, 외식조리과,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항공서비스과	관광전문학사	관광산업과, 호텔경영전공, 관광경영전공,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스마트호텔관광과 , 항공서비스과, 외식조리산업과, 외식조리과,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항공서비스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경호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경호스포츠과
화장품전문학사	화장품과학과	화장품전문학사	화장품과학과
중국통상전문학사	중국통상과	중국통상전문학사	중국통상과
바이오헬스융합전문학사	바이오헬스융합과	바이오헬스융합전문학사	바이오헬스융합과
[별표2] 학사과정 학위종별		[별표2] 학사과정 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학과명	학위종별	해당학과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유아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서비스학과, 외식조리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서비스학과, 스마트호텔관광학과 , 외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사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사	식품영양학과
미용학사	미용피부화장품학과	미용학사	미용피부화장품학과
임상병리학사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사	임상병리학과
의무행정학사	의무행정학과	의무행정학사	의무행정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바이오헬스융합학사	바이오헬스융합학과	바이오헬스융합학사	바이오헬스융합학과

현행	개정 (안)
제24조(편·재입학시기) ① 편입학은 매학년도 1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1 이전에 한다. ②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 이전으로 한다.	제24조(편·재입학시기) <u>편입학과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 이전에 한다.</u> <삭 제>
제25조(편입학) ① 편입학 시기는 타 대학에서 1학년을 수료한 자(32학점 이상 수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일반대학졸업자의 편입, 외국에서 졸업한 자의 편입은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도 허용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3학년 1학기에도 허용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전적 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간호학과 모집단위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25조(편입학) ① 편입학 시기는 타 대학에서 1학년을 수료한 자(30학점 이상 수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u>학기 초</u>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단, <u>간호학과 정원외</u> 학사편입학은 3학년 1학기에도 허용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u>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u>하다. 다만, 간호학과 모집단위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1조(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 ① 우리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각 호와 같다. 1. 원광보건대학교 <u>원광여행사</u>(이하 W Medical Tour & Care “WMTC”라 한다.) 2. WM주얼리컴퍼니 3. WM푸드몰 4. WM힐빙테라피 5. WM카페테리아	제81조(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 ① (현행과 같음) 1. 원광보건대학교 <u>학교기업 원광여행사</u>(이하 W Medical Tour & Care “WMTC”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8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원광보건대학교 WMTC, WM주얼리컴퍼니, WM푸드몰, WM힐빙테라피, WM카페테리아 본점 및 2호점은 익산시 익산대로 460, WMTC익산지점은 익산시 무왕로 839에 둔다. ③ 외국 및 서울, 기타지역 등에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8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WMTC, WM주얼리컴퍼니, WM푸드몰, WM힐빙테라피, WM카페테리아는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둔다.</u>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5조2, [별표1], [별표2]) 제2조(학과 신설 및 개편) ① 2024학년도 말로 글로벌항공서비스과를 폐지한다. ② 2024학년도부터 응급구조과를 신설한다.

현행	개정(안)
	③ 2024학년도부터 글로벌호텔관광과를 스마트호텔관광과로, 의무행정과를 보건의료행정과로, 3D제품디자인과를 주얼리디자인과로 변경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글로벌항공서비스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스마트호텔관광과로 전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인문사회계 학과로 전과한다.(단, 유아교육과는 제외한다) ② 글로벌호텔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스마트호텔관광과 소속으로 한다. ③ 의무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보건의료행정과 소속으로 한다. ④ 3D제품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주얼리디자인과 소속으로 한다.

2. 연봉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0조(연봉액 산출 및 연봉협상 과정) 제2항의 “다음 각 호와 같다.”를 “3항 내지 4항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한다”로 한다.
 - 같은조에 제3항 “③ 1단계 협상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신설한다.
 - 같은조 “제2항 제1호”를 “제3항 제1호”로 항을 변경하고, “제2항 제2호”을 “제3항 제2호”로 항을 변경하며, 제3항 제2호의 “1차 협상 토록 한다.”를 “1차 협상토록 하며, 협상은 제3장 평가소원제도 제26조의2항에 따라 시행한다”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2항에 “제3호”, “제4호”를 삭제한다.
 - 같은조에 제4항 “④ 3항에 의한 협상에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교직원이 2단계 협상을 요구할 경우, 2단계 협상 과정으로 연봉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를 신설한다.
 - 같은조에 제5항 “⑤ 연봉협상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결렬된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연봉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를 신설한다.
 - 제26조(평가소원제도의 운영) 제2항에 “3차에”를 “2차에”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연봉액 산출 및 연봉협상 과정) ① 연봉제 교직원에 대한 연봉액 산출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 산출 2. 전체 연봉제 교직원에 대한 급여 총액 결정(적정 연봉 인상을 결정) 3.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에 적용하여야 할 각각의 예산액 및 대학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인상·인하 결정 4. 연봉제 교직원에 대한 개인별 연봉액 산출 ② 연봉제 교직원에 대한 연봉협상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서면통보(개인별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그에 의한 연봉액 통보) 2. 서면통보에 의한 개인별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봉제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연봉제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1차 협상 도록 한다. 3. 1차 협상 결렬 시 해당 교직원이 2차 협상을 요청할 경우 연봉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협상토록 한다. 단, 해당 교직원이 2차 협상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서 제시한 연봉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4. 2차 협상 결렬자에 대하여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연봉액을 지급토록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연봉액 산출 및 연봉협상 과정)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연봉제 교직원에 대한 연봉협상 과정은 <u>3항 내지 4항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한다.</u> <u>③ 1단계의 협상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서면통보(개인별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그에 의한 연봉액 통보) 2. 서면통보에 의한 개인별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봉제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연봉제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u>1차 협상도록 하며, 협상은 제3장 평가소원제도 제26조의 2항에 따라 시행한다.</u> <삭 제> <삭 제> <u>④ 3항에 의한 협상에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교직원이 2단계 협상을 요구할 경우, 2단계 협상 과정으로 연봉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u> <u>⑤ 연봉협상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결렬된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연봉액을 지급하도록 한다.</u>
제26조(평가소원제도의 운영) ① 연봉제 교직원이 대학이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평가소원제도”를 둔다. ② 연봉액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연봉제 교직원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차에 걸친 연봉협상 절차를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소원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연봉액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연봉제 교직원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u>2차에</u> 걸친 연봉협상 절차를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연봉액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연봉제 교직원이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연봉 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봉협상 과정 중 연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재심 청구인은 재심결과에 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학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0조(성적) 제5항에 “학생의 성적을 학부형과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학생에게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성적 조회기간 및 성적정정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 같은조 제6항에 “성적 정정기간 중에(발송일로부터 1주 이내)”를 “성적정정기간 중에”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성적) ① 성적은 교과 성적(정기 및 임시시험, 평소성적 포함) 80%와 출석성적 20%(별표1)의 비율로 산출한다. ② 당해학기 군 입영 휴학자, 질병 휴학자로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재학한 자의 성적은 휴학일까지의 중간고사 및 수시 평가한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삭제(20050221) ④ 한 학기동안 전 수강 과목의 평균평점을 산출할 때 다음 공식에 의하여 소수점 세 자리까지 계산하여 둘째자리로 반올림한다.	제20조(성적) ① ~ ④ (현행과 같음)
$\text{※ 평균평점} = \frac{\sum(\text{각 과목학점} \times \text{각 과목평점})}{\text{총 수강신청 학점}}$	

현행	개정 (안)
⑤ 매학기 말에 학생의 성적을 학부형과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 정정기간 중에 (발송일로부터 1주 이내) 담당교수나 학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과오,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소정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⑧ 시간제 등록학생의 교과 성적은 제1항 및 제5항의 정규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⑨ 휴학 자가 복학 시 학과가 폐과되어 이수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동일계학과에 전과하여 과목을 이수한다. ⑩ 휴학 자가 복학 시 필수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유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⑪ 동일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하며, 재수강하여 상향된 과목임을 나타내는 “R”(Repeated Course)를 표시한다 ⑫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학점교류에 의한 해외연수, 병역법에 따른 학점인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 시 졸업소요 학점으로만 합산 처리하며 평점계산, 학사경고, 유급, 제적, 장학생 선발 등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⑬ 백분위 점수의 산정은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4.5(A+)를 100점으로, 1.0(D0)을 60점으로 환산하여 비율별로 점수를 계산하며, 현장실습, 실형·실습 및 실기, 교직과목 등 상대평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교과목 및 외국인 유학생 등에 한하여 그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매학기 말에 <u>학생에게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성적 조회기간 및 성적정정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u> ⑥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u>성적정정기간 중에</u> 담당교수나 학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과오,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소정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⑬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학술연구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4조(교재개발 지원 신청)에 “3월말 또는 9월말”을 “3월말”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재개발 지원 신청) 교재개발 지원 신청자는 매 학년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신청한다. 1. 교재개발비 지원신청(양식2-1) 1부 2. 교재개발 계획서(양식1-2) 1부	제14조(교재개발 지원 신청) 교재개발 지원 신청자는 매 학년도 <u>3월말</u> 까지 다음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신청한다. 1. 교재개발비 지원신청(양식2-1) 1부 2. 교재개발 계획서(양식1-2) 1부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조(구성) 제1항에 “7인(교원5, 직원2)이내의”을 “9인 내외의”로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중에서 <u>7인</u> (교원5, 직원2)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삭 제)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중에서 <u>9인 내외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원광보건대학교원광여행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4조(조직) 제5항에 “근로계약서(별지1)”를 “근로계약서”로 변경한다.
- “[별지1] 근로계약서”를 삭제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조직) ① WMTC 사장은 교원 및 직원 또는 경영능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총장이 보한다. ② 사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WMTC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WMTC 실무 운영을 위해 사장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④ WMTC 사업장에 필요한 본부장, 실장, 팀장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장 및 직원의 고용은 별도의 <u>근로계약서(별지1)</u>를 작성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제4조(조직) ① WMTC 사장은 교원 및 직원 또는 경영능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총장이 보한다. ② 사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WMTC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WMTC 실무 운영을 위해 사장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④ WMTC 사업장에 필요한 본부장, 실장, 팀장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장 및 직원의 고용은 별도의 <u>근로계약서</u>를 작성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한다.
[별지 1] <u>근로 계약서</u> 최종발견학교 _____ 의 발전과 번영을 기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일을 얻고 이를 존중하여 이행을 할 것을 서로 약정하여 당사자가 서한 하였다. 1. 근로계약의 목적 및 범위 1. 근로계약의 목적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까지의 기간 동안 _____ 학교의 _____ 과목의 _____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2. 근로계약의 당사자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 1. 근로계약의 당사자 2. 근로계약의 당사자 3. 근로계약의 당사자 4. 근로계약의 당사자 5. 근로계약의 당사자 6. 근로계약의 당사자 7. 근로계약의 당사자 8. 근로계약의 당사자 9. 근로계약의 당사자 10. 근로계약의 당사자 11. 근로계약의 당사자 12. 근로계약의 당사자 13. 근로계약의 당사자 14. 근로계약의 당사자 15. 근로계약의 당사자 16. 근로계약의 당사자 17. 근로계약의 당사자 18. 근로계약의 당사자 19. 근로계약의 당사자 20. 근로계약의 당사자 21. 근로계약의 당사자 22. 근로계약의 당사자 23. 근로계약의 당사자 24. 근로계약의 당사자 25. 근로계약의 당사자 26. 근로계약의 당사자 27. 근로계약의 당사자 28. 근로계약의 당사자 29. 근로계약의 당사자 30. 근로계약의 당사자 31. 근로계약의 당사자 32. 근로계약의 당사자 33. 근로계약의 당사자 34. 근로계약의 당사자 35. 근로계약의 당사자 36. 근로계약의 당사자 37. 근로계약의 당사자 38. 근로계약의 당사자 39. 근로계약의 당사자 40. 근로계약의 당사자 41. 근로계약의 당사자 42. 근로계약의 당사자 43. 근로계약의 당사자 44. 근로계약의 당사자 45. 근로계약의 당사자 46. 근로계약의 당사자 47. 근로계약의 당사자 48. 근로계약의 당사자 49. 근로계약의 당사자 50. 근로계약의 당사자 51. 근로계약의 당사자 52. 근로계약의 당사자 53. 근로계약의 당사자 54. 근로계약의 당사자 55. 근로계약의 당사자 56. 근로계약의 당사자 57. 근로계약의 당사자 58. 근로계약의 당사자 59. 근로계약의 당사자 60. 근로계약의 당사자 61. 근로계약의 당사자 62. 근로계약의 당사자 63. 근로계약의 당사자 64. 근로계약의 당사자 65. 근로계약의 당사자 66. 근로계약의 당사자 67. 근로계약의 당사자 68. 근로계약의 당사자 69. 근로계약의 당사자 70. 근로계약의 당사자 71. 근로계약의 당사자 72. 근로계약의 당사자 73. 근로계약의 당사자 74. 근로계약의 당사자 75. 근로계약의 당사자 76. 근로계약의 당사자 77. 근로계약의 당사자 78. 근로계약의 당사자 79. 근로계약의 당사자 80. 근로계약의 당사자 81. 근로계약의 당사자 82. 근로계약의 당사자 83. 근로계약의 당사자 84. 근로계약의 당사자 85. 근로계약의 당사자 86. 근로계약의 당사자 87. 근로계약의 당사자 88. 근로계약의 당사자 89. 근로계약의 당사자 90. 근로계약의 당사자 91. 근로계약의 당사자 92. 근로계약의 당사자 93. 근로계약의 당사자 94. 근로계약의 당사자 95. 근로계약의 당사자 96. 근로계약의 당사자 97. 근로계약의 당사자 98. 근로계약의 당사자 99. 근로계약의 당사자 100. 근로계약의 당사자	[별지 1] <삭 제>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